#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

소관부서	컴플라이언스파트
시행일	2019. 11. 01.
문서번호	CGV 컴플-CL- 04-20191101

2019년 11월 01일 제정



## 활용 가이드

#### 1. 목적

CJ CGV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, 당사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.

- 1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(이하 '공정거래법'이라 한다)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위반 여부
- 2. 물품 등 거래 계약시 준수사항 이행 여부

#### 11. 활용 방법

- 1. 본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에 기재된 내용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합시다.
- 2. 협력업체와의 거래 관련 업무 등을 하시는 분들이 자율점검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.

#### Ⅲ. 점검 요령

- 1. 체크리스트에 명시된 세부 사항에 대해 그 위반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합니다.
  - 'ㅇ'로 체크한 경우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.
  - 'x'로 체크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 수정하시거나 컴플라이언스파트로 문의 바랍니다.
  - '△'로 체크하신 경우 컴플라이언스파트로 문의 바랍니다.
- 2. 본 체크리스트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만을 추출한 것이며,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규의 위반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.
- 3. 해당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점검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써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.
- 4. 기타 체크리스트 내용, 활용 방법 등에 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컴플라이언스파트(cgv.cp@cj.net)로 문의 바랍니다.

# 목차

١.	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	-3
	1. 의의	-3
	2. 주요 행위 유형별 설명 및 예시	-3
	3. 제재사항	5
II.	물품등 거래계약 시 준수사항	-6
III.	, 체크리스트	-7
	1. 계약 체결 전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체크리스트	-7

#### 1.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

#### 1. 의의

- (1) "거래상 지위 남용"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. 공정거래법은 ①구입강제, ②이 익제공강요, ③판매목표강제, ④불이익제공, ⑤경영간섭 행위들을 "거래상 지위 남용"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(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·제3항,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별표 1의2 참조).
- (2) CJ CGV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모든 거래행위에 있어 공정거래법을 항상 준수하여야 한다.

#### 2. 주요 행위 유형별 설명 및 예시

#### (1) 구입강제

"구입강제"란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.

#### ※ 구입강제 행위 예시

• 합리적 이유없이 자신과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용역을 구입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

## (2) 이익제공강요

"이익제공강요"란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  $\cdot$  물품  $\cdot$  용역,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.

#### ※ 이익제공강요 행위 예시

• 합리적 이유없이 수요측면에서 지배력을 갖는 사업자가 자신이 구입하는 물량의 일정 비율만큼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

- 합리적 이유없이 사업자가 상품(원재료 포함) 또는 용역 공급업체에 대해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또는 협찬금이나 기타 금품·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
- 합리적 이유없이 대형소매점사업자가 수수료매장의 입점업자에 대해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입점비, POS 사용료 등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

#### (3) 판매목표강제

"판매목표강제"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.

#### ※ 판매목표강제 행위 예시

-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 시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는 행위
-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회원이나 가입자의 수를 할 당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지나 수수료지급의 중단 등의 제재를 가하는 행위

## (4) 불이익제공

"불이익제공"이란 구입강제, 이익제공강요, 판매목표강제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.

#### ※ 불이익제공 행위 예시

- 계약서 내용에 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'갑'의 일방적인 해석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경우
-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율, 지급대가 수준 등을 일방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
- 설계용역비를 늦게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아 거래 상대방이 사실상 수령을 포기한 경우
- 사업자가 자기의 귀책사유로 이행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당기간 지연이자를

- 지급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수령을 포기한 경우
- 합리적 이유없이 사업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인상 요인을 불인정하거나 자신의 책임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
- 자신의 거래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거절을 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(거래상 지위남용성 거래거절)

#### (5) 경영간섭

"경영간섭"이란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·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·시설규모·생산량·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말한다.

#### ※ 경영간섭 행위 예시

- 채권회수에 아무런 곤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대출해준 회사의 임원선임 및 기타 경영활동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특정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을 대출조건 으로 요구하는 행위
- 상가를 임대하면서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취급품목이나 가격, 요금 등에 관하여 지도를 하거나 자신의 허가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행위

### 3. 제재사항

- (1)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과징금과 같은 행정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으며,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벌칙이 내려질 수 있다.
- (2) 자세한 사항은 CP편람 p.52~53 참조.

#### Ⅱ. 물품 등 거래계약 시 준수사항

협력업체와 물품 등 거래계약을 할 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준수하여 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.

- 1. 물품 등 거래계약을 체결할 시 계약서에 거래 내용, 대금, 대금의 지급 방법, 지급 기일, 물품 등 검사 방법 등 계약 중요 내용을 꼭 기재합니다.
- 2. 정당한 사유가 없이 물품 등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.
- 3. 납품대금은 지급기일까지 꼭 지급합니다.
- 4. 납품하는 물품 등과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물품 등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대금을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.
- 5. 납품한 물품 등에 대한 검사를 할 때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검사기준을 정하지 않겠습니다.
- 6. 납품한 물품 등에 대한 검사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여야 하며, 불합격 시 불합격 사유 등을 문서로 빠르게 통지하도록 합니다.
- 7.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.
- 8.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.
- 9. 거래 상대방이 조정신청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거래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.
- 10. 물품 등 거래와 관련된 자료(계약서, 품질관리 관련 서류, 불합격 사유 통보 관련 서류, 분쟁 해결 관련 서류 등)를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 간 보관합니다.

## Ⅲ. 체크리스트

## 1. 계약 체결 전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체크리스트

NO	점검사항	0	Х	Δ
계약체결 전 당사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였는지 여부를 체크합니다.				
1	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는가			
2	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·물품·용역,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는가			
3	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는가			
4	위 1. ~ 3.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았는가			
5	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·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·시설규모·생산량·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는가			
물품	등 거래계약 시 준수사항 10 가지를 확인하고 준수합니다.			
6	물품 등 거래계약을 체결할 시 계약서에 거래 내용, 대금, 대금의 지급 방법, 지급 기일, 물품 등 검사 방법 등 계약 중요 내용을 꼭 기재한다.			
7	정당한 사유가 없이 물품 등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			
8	납품대금은 지급기일까지 꼭 지급한다.			
9	납품하는 물품 등과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물품 등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대금을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			
10	납품한 물품 등에 대한 검사를 할 때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검사기준을 정하지 않는다.			

11	납품한 물품 등에 대한 검사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여야 하며, 불합격 시 불합격 사유 등을 문서로 빠르게 통지한다.		
12	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		
13	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		
14	거래 상대방이 조정신청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거래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		
15	물품 등 거래와 관련된 자료(계약서, 품질관리 관련 서류, 불합격 사유통보 관련 서류, 분쟁 해결 관련 서류 등)를 거래종료일로부터 3 년 간보관한다.		